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4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김 윤·주철현·김우영

전진숙 • 백혜련 • 박해철

서미화 · 서영석 · 이수진

박희승 · 정진욱 · 박지원

민형배 · 장경태 · 김남근

정태호 · 전현희 · 김문수

강준현 • 양부남 • 임미애

권향엽 · 오세희 · 장종태

의원(24인)

제안이유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기본적인 진료 역량부터 세부전문 분야 수련까지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 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음.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 어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 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

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 도록 함(안 제3조).
- 나.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13조).
- 다.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 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 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안 제11조의3).
- 라.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의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함.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임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 바. 대한의학회가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며, 보건 복지부장관이 각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 (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7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전공의 등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임의"란 「의료법」에 따른 전임의를 말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 성에"를 "다음 각 호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1.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
- 2.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 다만, 대한의학회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과 이와 연계한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80시간"을 "6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6시간"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시간"을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6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3(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공의·전임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전임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에 따른 수련환 경평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 ⑤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성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 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 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불공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

- 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지 도전문의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3의 제목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을 "(지도전문의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제1항 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가 제7조에 따른 수련 시간을 준수하고 수련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공의 수런 프로그램, 제13조의3에 따

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3(공동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외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련의 시·도별 배치 기준은 「보건의료기본 법」 제17조에 따른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수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동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4(전임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77조제5항 에 따른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임의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

의한 필수의료 분야의 전임의 수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전임의 수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9조에"를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 제9조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연차별 ·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 이 법에 따른 전공의 4인
- 2. 「의료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임의 1인
- 5.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 6.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8.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수 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대한의학회에 위탁 하여야 한다.

- 5. 중증도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을 포함한 연차 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
- 6.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 7.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 8.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 9.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 전공의 등의 수련환경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법률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임의"란 「의료법」에 따 른 전임의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지원) ① (현행과 제3조(국가의 지원) ① (생 략) 같음)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 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 ----다음 각 호에 대하여----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다. <신 설> 1.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 2.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신 설>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u><신 설</u>>

② (생략)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 제7조(수련시간 등) ①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 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 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 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필수 의료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 성. 다만, 대한의학회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하여 자문하여 야 한다.

- -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과 정에 관한 사항과 이와 연계한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 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 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u>36시간</u>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경우에는 연속하여 <u>40시간</u>까지수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략)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 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

②
<u>24시간 이내의 범</u>
위에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
는 시간
<u>3</u> 0시간 이내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렁으로
<u>정하는 시간</u>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 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60시 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 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 다.

③ (생략) <신 설>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30시간 이내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 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전공의 · 전임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 공의 ·전임의를 모집 및 선발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 · 전임 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 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전공의 · 전임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제15 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 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를 받거나 전공의 · 전임의 모 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성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불공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생 략)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신 설>

<신 설>

③ (생략)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 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정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지도전문의에게 그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의3(지도전문의의 자격) ①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
는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
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
서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_		, _	- /				
제133	소(수 학	변병원	등	및	수련	전님	문
과与	금의 :	지정)	1				
	<u>지</u>	정하여	제	15조	는제1 [†]	항제	1
<u>ই</u> ০	에 따	른 전	공의	수	런 프	로:	<u>ユ</u>
램,	제13	3조의(3에	따른	른 전	공	의
공동	든수려	亚豆	ミコi	램 :	제132	준의	4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 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 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 ② 고리 H 리 H 리 리 쇼 - 스크 내 al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런병원
등에서 전공의가 제7조에 따른
수런시간을 준수하고 수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
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
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기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 ~ 5. (현행과 같음)
<u>6</u> .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
공의 수련 프로그램, 제13조
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였거나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

 6. (생 략)

 ③ (생 략)

 <신 설>

<u>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u> <u>경우</u>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의3(공동수련)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위하 여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외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 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 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 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련의 시·도별 배치 기준은 「보건 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동수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동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 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제13조의4(전임의 수련)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77 조제5항에 따른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임의의 수련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 ・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 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 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필수의료 분야의 전임 의 수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 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전임의 수련 프로 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 ⑥ (생 략)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저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u>1.</u> ~ <u>8.</u> (생 략)

② (생략)

따른 전공의 수런 프로그램, 제
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
련 프로그램,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이행 여
<u>부 및 적절성, 제9조에</u>
<u>.</u>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
1.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
동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u>3.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u>
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u>4.</u> ~ <u>11.</u> (현행 제1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하다.

<u><신</u> 설> <신 설>

- 1. (생략)
- 2. (생략)
-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

 의 조직·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는 자

<신 설>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

5. (생략)

<u><신</u>설>

③	

1. 이 법에 따른 전공의 4인

2. 「의료법」 제77조제5항에따른 전임의 1인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u><</u>삭_ 제>

- 5.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자4인
- 6.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1인
 - 7. (현행 제5호와 같음)
 - 8.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가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

④ ~ ⑥ (생 략)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신 설>

<u><</u>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⑥ (현행과 같음)

- --.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의 업무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수련 프로그램의 효율 적인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대한의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 5. 중증도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을 포함 한 연차별 · 전문과목별 전공 의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
- 6.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 동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 계화
- 7.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 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 8.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 9.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 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신 설>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수탁기관이 위탁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